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2. 11.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1월 15일(화) 09:30~16:1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2022년도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87호 『(주)우리금융지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97호 『○○○○○○(주) 및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

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조치원인사실을 보시면 금감원에서는 OOOOOO(주)이 OO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여러 차례 발행해서 그중에서 4번은 OOOOOO(주)이 직접 판매를 하고 3번은 □□□□□□(주)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총136명에게 DLS를 모집했다고 지적을 하였음. 이와 같이 금감원은 OOOOOO(주)이 직접 판매한 DLS, 이것을 직접 판매분이라고 하겠음. 그리고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에 DLS를 편입해서 판매한 부분, 이하 편의상 특정금전신탁 판매분이라고 하겠음. 양자를 합산해서 50인 이상이라고 보셨음. 그러나 본 건 증권발행 당시에 직접 판매분과 특금 판매분을 합산할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증권기준으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간주모집일 경우 가입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금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같이 OOOOOO(주)이 직접 판매한 부분과 신탁업자가 특금으로 판매한 부분은 각각 구별해서 모집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위원님들께서 OOOOOO(주)이 발행한 DLS는 비슷한 시점에 여러 번 발행되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별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음. 하지만 투자대상자산은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건 DLS가 발행되었던 2017년 11월, 12월 사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도 있고, 특히나 설명 법규에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에 규정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서는 파생결합증권,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DLS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아마 금감원 초안에서는 일반규정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처럼 발행인 스스로의 자금수요에 의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고, 본 건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으로 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증권에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함. 지금까지 설명 올린 것처럼 OOOOOO(주)이 DLS를 발행한 것, 그리고 □□□□□□(주)이 특금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별개의 행위임. 따라서 각각 모집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의 경우 OOOOOO(주)이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3차례에 걸쳐 발행한 본 건 DLS를 당사 신탁에

편입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음. 세 차례 발행한 본 건 DLS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음. 다만, 금감원은 당사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주선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궁하기 어려움.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주선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 본 건 DLS 발행 경위를 보면 당사가 본 건 DLS의 발행조건 등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사가 본 건 DLS의 발행조건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그 당시 특수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건 DLS는 이례적으로 발행사가 고유재산으로 이미 투자한 상품을 셀다운 (sell-down)하는 것이었음. 발행사는 최대한 빨리 고유재산 물량을 처분하길 원했음. 본 건 DLS를 당사만 판매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시기에 발행사 리테일에서도 사모로 판매하고 있었음. 그리고 발행사는 투자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애초에 본 건 DLS를 공모상품으로 구성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사에게 회차별로 50인 이상으로만 구성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음. 만약 당사가 발행사와 주도적으로 협의하면서 본 건 DLS를 회차별로 쪼개어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당사가 발행조건 등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발행경위 및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사가 발행사와 협의하여 발행조건 등을 정하거나 회차별로 쪼개어 판매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 결론적으로 당사는 본 건 DLS의 발행조건 등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만 담

당한 자로서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주선인이 아님. 따라서 과징금 부과조치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DLS의 발행일정, 발행금액, 회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은 전혀 관여를 안 하셨는지?

▶ (진술인) OOOOOO(주)에서 발행일정과 총발행금액을 정해 주면서 저희에게 얼마까지 판매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고 저희는 그 발행일정에 맞추어 고객 자금수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수요조사를 거쳐서 해당 일정별로 얼마 정도를 할 수 있겠다고 전달만 했을 뿐임.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건을 저희가 결정한 사례가 있어 보이는데 그때 논의를 돌이켜 보면 OOOOOO(주)은 전매 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특금 판매사가 50인 이상으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더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당시에는 미래에셋방지법이나 이런 논의가 있을 때여서 그런 부분을 더 했어야 했기 때문에 '고의'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주)은 발행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OOOOOO(주)에서 DLS의 발행일정, 발행금

액, 회차 등을 결정해 주면 거기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일정별로 얼마를 판매할 수 있다고 알려줬을 뿐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주관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 의견은 어떠한지?

- (보고자) 저희들은 좀 다르게 파악하고 있음. 저희들은 □□□□□(주)가 투자자 수에 맞추어서 DLS 발행일정이라든가, 발행한도 등을 OOOOOO(주)과 상시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음. 저희들이 OOOOOO(주) ☎☎☎씨와 문답한 내용에도 보면 “□□□□□(주)은 날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금액이 모아지는 대로 OOOOOO(주)에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면 OOOOOO(주)는 발행해 주었다.”는 진술도 있고, 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가 □□□□□(주) 하나에 불과하고 OOOOOO(주)은 ○○펀드를 선투자했고 이것을 DLS 형태로 조속히 셀다운(sell-down)하여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주)의 판매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그리고 □□□□□(주)와 OOOOOO(주)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또 이번 ○○펀드 판매수수료는 3%인데,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는 1%에 형성이 되고 있음. 그러니까 시장에서 200bp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판매수수료의 차이임. 그렇기 때문에 □□□□□(주)가 단순 판매인으로서의 역할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다수 있음.
- (위원) 그러니까 발행일정이나 발행금액, 회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OOOOOO(주)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이 이루

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문답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음.

○ (위원장) 위원님들, 집합투자증권으로 봐서 자조심이 과징금을 수정하여 건의를 했음. 자조심 건의안에 동의하시는지?

○ (위원) 동의함.

○ (위원) 동의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8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같은 날 모집매출이 있으면 각각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둘 간에 조정하는 가중·감면을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같은 날에 되기는 했습니다만 각각의 모집과 매출이 별도의 위반임.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산출액이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별도의 감경규정은 없고 각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위원) 자진신고를 한 건이어서 감경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음.
- (위원) 위반행위가 같은 날 발생해서 그런 사정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함.
- (위원) 자진신고를 한 것이 회사 차원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두 분 있으신데 어떤 특정한 분이 주도해서 자진신고를 한 것인지?
  - (보고자) 자진신고를 하게 된 것은 이 회사가 IPO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관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위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IPO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장) 동 안건은 자진신고한 점, 모집매출이 같은 일시에 대부분 동일한 투자자로부터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 감경의 여지를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의결안건 제199호 『(주)한프 前대표이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0호 『(주)에스제이케이 前대표이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1호 『지스마트글로벌(주)의 감사인 정진세림회계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가 당초 ○○○○○○○로부터 매입 시 매입 계약서에는 '광고사업권 일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와 계약할 때는 7구좌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보면 '광고시

간이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더라도 운영시간의 80%(광고시간 최대치)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는 모든 구좌가 70%의 상업광고용 구좌와 30%의 공익광고용 구좌가 결합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3호 『(주)토마토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악의를 가지고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前대표이사가 금전대여 건에 대해 결재(승인)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반행위 동기나 방법에 대해 상당히 고의적이고 부당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이 됨. 자본시장법 제34조제3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제4항과 제5항을 이행할 수 없는 조항인데 이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특히, 분기마다 보고 및 공시를 누락할 의사가 있어서 행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조금 과도한 처분이라

고 생각함. 더군다나 증권시장 투자여건 악화로 당사도 매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채용 및 내부통제 구축, 관리감독 강화 등에 비용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도한 평가나 중복 부과는 없는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오늘 자료 주신 것 중에 2억 3,700만 원 과징금부과 결정금액은 제재심 부의할 때 2021년 3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억 3,700만 원이 나온 것 같음. 그런데 오늘 증선위 부의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직전 재무제표가 2022년 3월말 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2억 6,600만 원으로, 2,900만 원 증가하게 되는데, 저는 2022년 3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위원장) 제203호 안건은 (주)토마토투자자문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022년 3월말 기준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까지 해서 2억 6,6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04호 『에버그린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조치의 원인이 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가 지난 6년간에 걸쳐 일어났음. 이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대표이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타인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고의적인 일탈은 전혀 아님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 그뿐만 아니라 해당 검사기간인 2016년 5월 27일에서 2021년 6월 20일 기간 중 매월말, 분기별 그리고 매년 외부감사를 필한 회계보고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왔음. 그러나 특별한 지적이 없었던 관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음. 초기 3~4년 동안은 적자로 회사의 자금이 부족했었고, 주주들의 주식매수 요청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자금 또는 회사로부터의 대여금으로 사준 것임.

○ (위원) 금감원에 업무보고서 제출하셨을 때 이런 대주주 신용공여 사실을 적시해서 업무보고를 제출하셨다고 하신 것인지?

▶ (진술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의 재무제표나 이런 상황을 보내드렸음.

○ (위원) 그러면 대주주 신용공여 사실을 재무제표나 이런 곳에 표시를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는지?

- ▶ (진술인) 저희가 맨 처음에 일반회사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 2~3년 지나서 투자자문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제가 솔직히 잘 몰랐음. 그래서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저한테 사달라고 하니깐 대표이사인 제가 저의 자금으로, 그리고 회사가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해서 사준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과징금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2022년 3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진술인 본인이 대표이사이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신용공여를 했다는, 대표이사가 주도를 했다는 것임. 이 부분을 혹시 자본시장법이나 여타 형사법적으로,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분명한 배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검찰고발 내지 정보사항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음.

- (위원장) 제204호 안건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위반 과징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05호 『신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은 신라자산운용(주)의 前대표이사 ○○○ 등의 비위행위에 의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2]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現경영진은 비위행위에 연루되었던 ○○○ 등 전임경영진은 모두 회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현재는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신라자산운용(주)은 종전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인가 및 등록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해를 많이 입은 점 등을 고려하시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제하여 주시거나 대폭 감액하여 주시기 바람.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물적분할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일본에도 존재하고 있음.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도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는 경우에 합병이라든가 영업 양수도 분할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음. 그런데 물적분할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안 되어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이번에 같이 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3호 『케이비증권(주)의 (주)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15분 폐회)